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연구개발특구 고도화 등 〉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95호)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특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서비스 등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1호의2 등) ...	4
2. 특구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포함(안 제6조의2제2항)	9
3.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유예기간 연장(안 제9조의4제1항)	12
4. 테스트베드 구축 및 활성화 지원(안 제12조의2)	16
5. 특구 외 지역의 실증특례 신청(안 제16조의2제1항)	20
6. 건축물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의 「국토계획법」 특례 추가(안 제44조) ...	24
 [참고1] 연구소기업 주요 내용	28
[참고2] 연구개발특구 건폐율 및 용적률 관련 조례 현황	3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장철민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2. 19.

다. 회 부 일 : 2026. 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로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사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산업 구조의 급변에 대응하기에는 기존 운영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 첨단기술 등 국가의 중요 기술개발과 관련된 법제가 정비되고,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기업들을 특구제도에 포섭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그 시스템이 미흡하고, 연구개발서비스 지원, 글로벌 진출 및 국제협력, 신기술 실증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 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특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용도지역을 지정 전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 및 제5조제6항 신설).
- 나. 특구육성종합계획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지원 및 국제협력·해외시장진출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특구개발계획에는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 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시 기술분야에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연구소기업의 주식 보유 비율 미달 시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9조의4).
- 마. 국가 및 지자체의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지원 근거와 연구개발서비스 및 해외진출 지원 시책 수립 의무를 신설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 바. 특구 내 실증이 곤란한 경우 특구 외 지역을 실증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단서 신설).
- 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30조의2).
- 아. 입주기관 편의 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의 예외를 인정하고, 특구관리계획에 입주대상업종 등을 포함하도

록 하며, 진흥재단의 사업 범위 확대 및 결산보고 기한 조정, 업무 위탁 대상 확대 등을 통하여 특구 운영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함(안 제34조, 제37조, 제48조 및 제61조 등).

Ⅲ. 검토의견

1. 특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서비스 등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1호의2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특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서비스 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1의2. “특구개발사업”이란 특구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특구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특구 내 기업 유치 및 연구인력의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문화·의료·복지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특구의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는 도로 건설사업, 전기·통신·가스·용수 등의 공급시설사업,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건설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현행	개정안
2. (생략) <u><신설></u>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u>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u>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 14. (생략)	<u>사업에 부대되는 사업</u> 2. (현행과 같음) 2의2. “연구개발서비스”란 「<u>연구산업진흥법</u>」 제2조제1호가목 또는 <u>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u>를 말한다. 3. ----- -----「<u>산업발전법</u>」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u>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u>」 제8조제1항에 따른 <u>국가전략기술</u> 및----- -----. 4. ~ 14.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특구개발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특구개발사업은 현행 제6조의2¹⁾에 따라 연구개발·교육·사업화·주거 기능이 복합된 지구·구역을 조성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개정안은 특구개발사업을 단순히 특구 내 용지조성 사업 및 건축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연구개발 기능의 집적과 기술혁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의 명칭·위치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특구의 개발 필요성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7. 재원조달방법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10. 교통처리계획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12.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
13. 환경보전계획
14.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을 위한 환경조성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관할 시·도지사는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개발계획안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특구개발계획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과 제안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및 사업화 촉진이라는 특구개발의 본래 목적과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이 특구개발사업의 개념을 물리적 개발행위 중심으로 한정할 경우, 특구의 본질적인 기능인 연구개발과 산업화의 연계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특구개발사업의 개념은 단순한 기반시설 조성에 한정하기보다 연구개발, 사업화, 기업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적 개발사업의 성격을 반영하도록 재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연구개발서비스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법률 제15238호) 제2조제4호²⁾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규정되어 왔으나, 이후 「연구산업진흥법」(법률 제18075호, 21. 4.20. 제정)의 시행에 따라 해당 개념이 “연구산업”³⁾으로 이관·재정립된 바 있음.

2) 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법률 제15238호, 2017.12.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9.>

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3)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이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에 관한 개념은 이미 별도의 법률 체계에서 규율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다시 정의 규정으로 도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또한, 현행 제8조제2항4)에서는 전문연구사업자에 대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개발서비스와 관련된 지원은 현행 규정만으로도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더라도 정책 집행이나 지원 근거 측면에서 실질적인 추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기존 법령과의 중복 또는 체계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한 관련 규정 신설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다.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유지·보수하는 산업

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2. "연구사업자"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전문연구사업자"란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특구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포함(안 제6조의2제2항)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특구개발계획에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생략) 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4. <u>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u> <u>(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u> 5. ~ 7. (생략) <u><신설></u> 8. ~ 16. (생략) ③ ~ ⑧ (생략)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특구개발사업의 내용</u> 5. ~ 7. (현행과 같음) 8. <u>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u> 9. ~ 17. (현행 제8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특구개발계획에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특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 방향성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특구 내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을 사전에 규정할 경우 기업의 입주 선택 및 사업 전환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산업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음.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산업이나 융합 기술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산업 중심으로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둘째, 특구개발계획은 일정 기간 유지되는 중장기 계획이라는 점에서, 개발계획 단계에서 업종을 특정할 경우 향후 산업 트렌드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의 현실 적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 계획의 잦은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을 것임.

- 셋째,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특정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정책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자의적 업종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특구개발계획은 산업 발전 방향 등 전략적 수준 중심으로 구성하되 업종 규율은 최소화하거나 유연하게 설정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정책 수단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과 같이 특구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업종을 제한할 경우 산업환경 및 기술 변화에 따른 탄력적 기업 유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아울러 개정안 제34조제3항4호⁵⁾ 특구관리계획에 입주대상업종과 입주기업체의 자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의 취지를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5) 안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유예기간 연장(안 제9조의4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연구소기업의 주식 보유 미달 시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③ (생략)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 ----- ----- ----- ----- ----- ----- -----10년의----- ----- ----- -----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⁶⁾으로,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및 수익 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음.[참고1]

○ 현행법에 따른 연구소기업 설립 요건 중 하나는 설립 주체가 연구소기업 자본금의 10% 이상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 포함)을 보유하여야 하고, 주식 보유 비율이 10% 이하 5% 이상일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전 유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분 구조의 유연성 및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 적용 기업 현황(2025년)]

변경등록 시점: 2025

지분율범위	설립기관
5% ~ 7%	15
7.01% ~ 9%	16
9.01% ~ 9.99%	9
합 계	40

※ 유예적용 대상 기업은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 제2항(등록된 내용 가운데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 → 요건검토를 통해 변경등록되는 시점부터 유예 적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연구소기업 제도의 핵심은 공공연구기관 등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를 확보하려는 데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보유 비율 미달 상태를 장기간(10년) 허용할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지배력 및 기술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연구성과의 사업화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지분 요건 미충족 상태는 기업의 지배구조 또는 경영상 문제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음에도,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할 경우 지분구조 정상화 노력이 지연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이로 인해 형식상 연구소기업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반 기업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부실기업의 시장 잔존 가능성도 증가할 우려가 있음.

- 둘째, 유예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제도 남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즉, 설립 초기에는 요건을 충족한 후 이후 지분을 의도적으로 낮추면서도 장기간 연구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여 세제·재정지원 등 혜택만 향유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다른 연구소기업과 비교할 때, 요건을 미충족한 기업에 대해 장기간 유예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동일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요건 준수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게 될 경우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종합하면, 개정안은 연구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일시적인 지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유예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연구소기업의 제도 취지 훼손, 도덕적 해이 및 제도 남용, 정책 형평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유예기간의 단순 연장보다는 일정 기간 내 단계적 지분 회복을 요구하는 방식,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조건부 유예를 인정하는 등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테스트베드 구축 및 활성화 지원(안 제12조의2)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특구 내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2(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의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테스트베드의 구축·운영 2. 테스트베드 제공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지원 3.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특구 내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특구 내의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테스트베드를 특구 내 입주 기업체·입주기관에 개방·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현행	개정안
	<u>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u>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절차, 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의 개방·활용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테스트베드⁷⁾는 신기술·신제품을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특히, 연구개발 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성능·안전성·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개정안은 테스트베드 구축 및 활성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신기술의 실증·검증을 지원하고, 기술의 사업화와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혁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테스트베드는 기관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관련 법률, 예산, 정책계획 등에 기반하여 다양하게 구축·운영되고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그 내용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일률 규정할 경우 오히려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저해되어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둘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현행 제8조8)는 연구성과 사업화 기반 구축을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상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역시 포함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종합하면, 개정안은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기술사업화 촉진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취득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 시장과의 연계체계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하고, 법률·회계·엔지니어링 및 경영 자문 등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특구의 과학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법률 차원에서의 구체적·
일률적 규정은 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기존 규정과의
체계상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테스트베드 관련 사항은 현행 규정 체계 내에서 포괄적으로 운
영하거나, 정책적 수단을 통해 탄력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 개정안의 내용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특구 외 지역을 실증구역에 포함하여 실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구 내의 물리적·환경적 제약을 보완하고 실증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특구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규제 특례 및 집중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제도임.

그럼에도 특구 외 지역까지 실증구역으로 확대할 경우, 특구와 비특구 간의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특구의 공간적 개념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도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

- 둘째, 특구 외 지역까지 실증특례가 적용될 경우, 사실상 해당 지역에도 규제 완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일 지역 내 다른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셋째, 특구 외 지역을 실증구역으로 포함할 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특히, 특구 지정은 제4조제3항9)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실증특례의 경우에는 제16조의2제5항10)에 따라 실증특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도록 하고 있어 특구 지정 절차에 비해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 수준의 이해관계 조정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실증사업은 성격상 미검증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특구 외 지역까지 확대할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③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경우 주민 수용성 문제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
확해질 우려도 있음

○ 종합하면, 개정안은 실증사업의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
해되나, 특구 제도의 본질적 취지 약화, 규제 특례 적용의 형평
성 문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수용성 저해, 안전성 및 책임소
재 불명확 등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특구 외 실증구역 지정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명확히 하며, 규제특례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고 안
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건축물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의 「국토계획법」 특례 추가(안 제44조)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¹¹⁾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u>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u> 정할 수 있다.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 ----- -----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에도 ----- ----- <u>건폐율 · 용적률의 최대한도 및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u> -----.

나. 검토의견

- 현행 제44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그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참고 2]
- 개정안은 특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건축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설계와 신속하고 탄력적인 규제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혁신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제한의 범위 및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과도한 재량 부여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둘째, 현행법 제36조¹²⁾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특구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시계획,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계획이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 따로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신산업·신기술의 육성 등 특구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를」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이 조례로 건축 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현행 법체계와 상충되거나 규범간 정합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종합하면, 개정안은 특구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포괄위임에 따른 재량 확대, 법령 간 충돌 가능성, 규제 체계의 일관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특례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 제36조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조례로 위임 가능한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규모의 최대한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227

[참고1] 연구소기업 주요 내용

자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

1. 정 의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창업·벤처기업 모델이자 기술사업화 모델임

2. 설립주체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공공기관 등)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해당하는 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회사

3. 설립혜택

세제 혜택	국세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기타혜택		특구육성사업 지원시 우대(사업별 공고)

※ 지방세 세제혜택은 특구별 시·도·구·군·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4. 설립요건

설립주체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목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
설립주체의 출자비율	설립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지분 포함)을 보유
기업소재지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 ※ 본사 소재지의 설립등기 기준이며, 공장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는 문제되지 않음

5. 설립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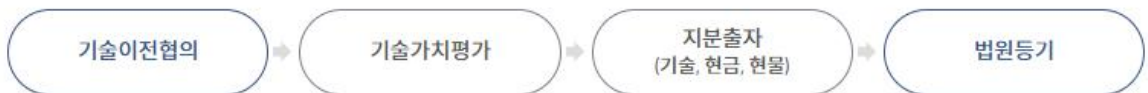
연구기관과 기존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연구기관이 기존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하여 기존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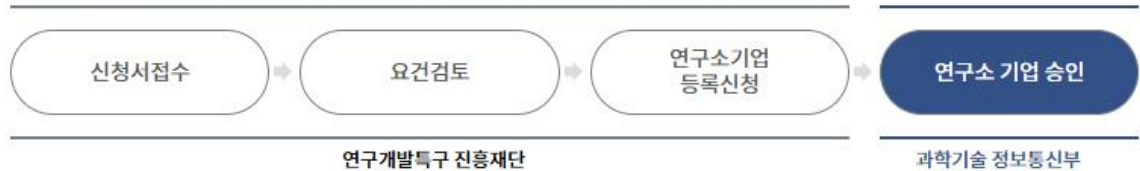
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 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6. 설립절차

· 연구소기업 설립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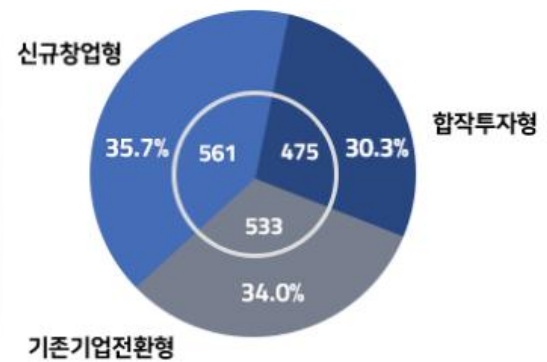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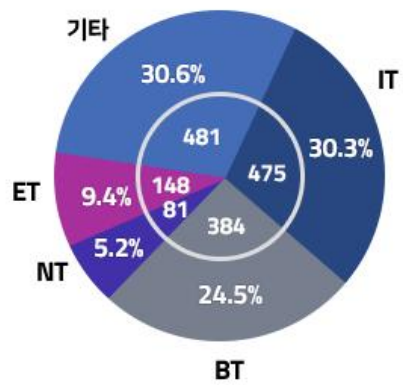


· 연구소기업 등록



7. 연구소기업 현황

□ 2022년 12월 기준 제1569호 연구소기업 설립



[참고2] 연구개발특구 건폐율 및 용적률 관련 조례 현황

특구	조례명	내 용
대덕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u>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u>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u>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u>로 한다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u>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u>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경우 <u>용적률은 200퍼센트 이하</u>로 한다. 이 경우 <u>건물높이는 7층 이하</u>로 한다.
광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⑧ 제1항제16호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안의 <u>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u> 안에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u>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u>로 한다.
대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4조의4(연구개발특구 안에서의 용적률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안에서의 녹지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75조 또는 제80조에 따른 <u>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u>로 한다. 다만, 이 경우 <u>건축물의 높이는 7층 이하</u>로 한다
부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특례)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49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제50조에 따른 용적률의 <u>150퍼센트 이하</u>로 한다.
전북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건폐율의 완화) ⑧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녹지지역 내 연구개발특구에서의 건폐율은 <u>40퍼센트 이하</u>로 한다.
전북	완주군 계획 조례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경우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의 <u>200퍼센트 이하</u>로 한다.

경기 안산 (강소 특구)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u>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u>의 경우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u>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u>로 한다.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u>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u>의 경우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u>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u>로 한다.
------------------------	-------------------	--